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00 | 2023.09.05 (2023.08.28~09.0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8.28~9.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 뉴스레터(Policy and Law Report)가 2019년 9월 첫 발행 이후 **제200호**를 맞이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제200호 발행을 맞아 기존 뉴스레터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제호를 **‘세종Law Focus’**로 변경했고, 앞 부분에 전체적인 내용 요약 및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또한, 필요하신 정책과 법안들을 목차에서부터 바로 찾아가기 쉽도록 바로가기를 추가하는 한편 전반적인 디자인을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저희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은 고객 여러분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반드시 아셔야 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 **‘세종Law Focus’**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9. 1.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제410회 정기회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로서 지난 임기 내 의정활동을 종합정리하는 한편, 내년 총선대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0. 10.부터 실시 예정인 2023년도 국정감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플랫폼 규제, 가상자산, AI, 부실 건설 개선방안 등 주요 국가이슈들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에서는 지난 뉴스레터 제198호(2023. 8. 21.)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들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추후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별도 검토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제200호에서는 8. 28~9. 3간 발표된 각종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국회 주간 의사일정, 토론회 세마나 자료집 발간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정부는 8. 29.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을 모토로 한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전년도보다 2.8% 증가한 656.9조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동안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였음을 밝히며,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❶약자복지 강화, ❷미래준비 투자, ❸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❹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발표에 이어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수법안으로서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일원화 등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 상향 등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시장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창업정책 체계(패러다임)**를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의 핵심 내용은 ① 벤처 생태계의 세계화(글로벌화), ② 벤처투자의 민간전환 촉진 (민관 출자하여 '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③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④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 촉진, ⑤ 도전적 창업분위기 조성 확대 등으로,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 저변 확대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①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등 우선 적용 및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② 최근 역전세로 인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의 경우 주로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음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국회 입법발의 내용으로는, **규제가 아닌 기업의 순조로운 ESG체제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금융기관 등의 업무를 정하는 등 실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을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주요 경쟁국의 수준에 맞게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따른 간첩죄 수준으로 상향하고 손해배상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성원의원 대표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주 국회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9. 5(화)~9. 8(금) 4일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방위는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을 상정 예정이며,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방문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기재부) 6
-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기업간담회 개최 (기재부) 7
-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과기부) 8
-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중기부) 10
-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금융위)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4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4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

3. 법률 발의안

[바로가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18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이원욱의원 등 25인) 19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3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3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등 10인) ...	27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7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9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32인).....	2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인)	30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3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31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2인)	3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0인)	3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33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35

[별첨1] 지난 호 뉴스레터(제19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8.28~9.3) [바로가기](#) 3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3-08-29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둔 총 656.9조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함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였으며,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❶약자복지 강화, ❷미래준비 투자, ❸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❹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편성한 바, 2.8%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여, 국가채무 증가 폭을 '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8조원으로 축소하는 등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였다고 밝힘

그리고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하여, '25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GDP 대비)는 '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임



기획재정부는 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간담회를 주재하여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함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은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혁신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플랫폼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인공지능(AI) 윤리정책 고도화(카카오),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쿠팡), 국제 기준을 반영한 후기(리뷰) 운영정책 도입(우아한형제들),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 설립(구글), 이용자 간 분쟁해결 적극 지원(당근마켓), 상품 정렬기준 개편(야놀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는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추진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및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 방안 등이 논의됨. 특히,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를 위해 자율기구 법적 근거 마련, 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 추진, 자율규제 이행점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임

앞으로도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플랫폼과 입점업체·소비자 등 관계에서는 자율규제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기업명	자율규제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네이버	◆ (추진경과) 중소기업·소상공인·창작자의 성장과 상생 지원,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자율규제 노력 지속 * 중소기업의 브랜딩 전략 수립 지원('23.6), 창작 생태계 지원 위한 '웹툰위드' 추진('23.4) 등 ◆ (향후 계획) 경제학, 소비자, 법학 등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규제 위원회를 발족하여 자율규제 추진역량 제고
카카오	◆ (추진경과) 소상공인·농축어가의 디지털 소통·판로 지원*, 책임있는 기술윤리 운영을 위한 국내 최초 알고리즘 윤리헌장 선포, 기술윤리위원회 신설, 기술윤리 전담조직 운영 등 다각도의 자율규제 노력 지속 *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젝트(전통시장 상인 디지털 전환 지원), 제가버치 프로젝트(버려지는 농축수산물 판로지원), 소신상인 프로젝트(소상공인 모바일 마케팅 지원) 등 ◆ (향후 계획) AI 윤리정책을 강화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트 수립 등 통해 기술윤리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추진
쿠팡	◆ (추진경과) 既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에 따라 입점 약관 필수 기재사항 반영, 배달앱 분야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 지원 등 추진중 * 중소기업의 브랜딩 전략 수립 지원('23.6), 창작 생태계 지원 위한 '웹툰위드' 추진('23.4) 등 ◆ (향후 계획) 앱 내 소비자 주문 화면에 검색·추천 순서 결정 기준 공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및 상생리포트 발간 등

우아한형제들	◆ (추진경과) 국제 기준을 반영한 리뷰 운영정책 도입,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 지원 정책 1년 연장, 앱 내 가게 노출 관련 주요 기준 홈페이지 공지 등도의 자율규제 노력 지속 ◆ (향후 계획)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등 추진
구글	◆ (추진경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투명성 제고 및 신뢰 체계 구축 등 측면에서 다각적인 자율규제 노력 지속 * 중기부, 창업진흥원과 함께하는 '창구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확대(1~4기: 각 80개사→ 5기: 100개사, '23.5월)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보강, '검색결과에 관한 정보' 기능 시범 도입('23.3월) 등 ◆ (향후 계획) 다양한 청년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시행·확대하여 상생 추구, 제품 및 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 설립을 통한 신뢰성 제고 모색
당근마켓	◆ (추진경과) 개인간 거래 분쟁 해결 지원(전담팀 구성 등), 사기 탐지 시스템 보강 등 이용자 보호 호 추진중 ◆ (향후 계획) 분쟁조정센터 설치, 분쟁사례집 발간 등 통해 이용자 보호 고도화
야놀자	◆ (추진경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판단할 수 있도록 상품 정렬기준 개편, 광고상품 별도 표기 등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 노력 ◆ (향후 계획) 소비자 피해 예방·해소 방안 마련*, 입점업체 보호 강화**, 불법 숙박상품 지속 점검 등 입점업체·소비자와 상생 추진 * (예) 미성년자 예약 시 입점업체 업주에 취소권한 부여 ** (예) 소비자 전담조직 신설 및 태풍 등 기상악화 시 피해예방 활동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Ⅰ) - 기술패권 경쟁 분야'를 심의·의결함

전략기술특위는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이 범부처 주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 지난 4월 출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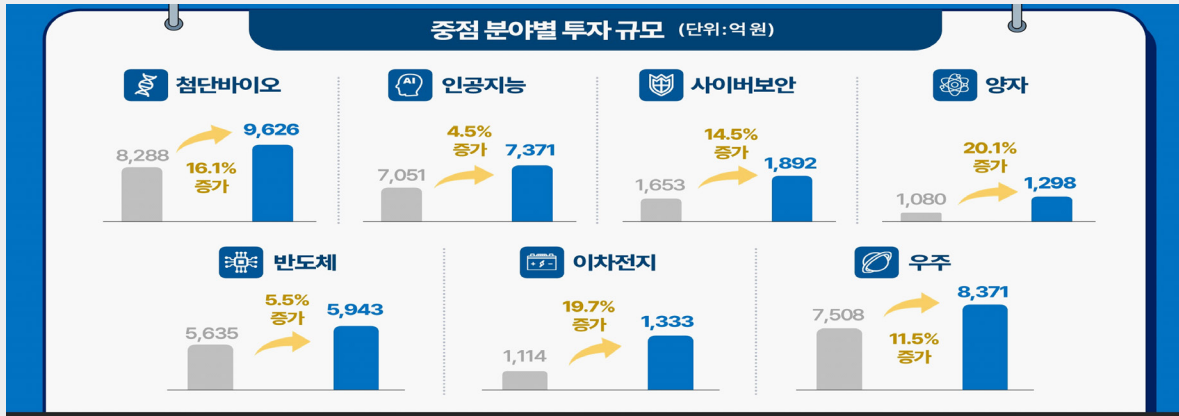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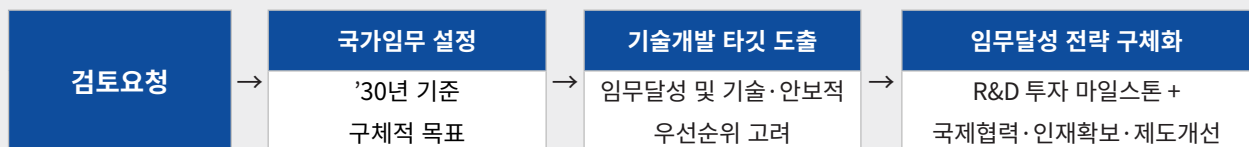
- 최근 정부는 기술주권 확립을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음. 2024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을 '23년(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이차전지(19.7% ↑), 반도체(5.5% ↑) 분야에서 주력 산업 경쟁력 유지는 물론 전고체배터리, AI반도체 등 미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함

<참고 : 국가전략기술 중점 분야별 '24년 예산 배분·조정 결과>

**② 전략로드맵 수립 주안점**

- 전략로드맵은 경제안보 관점 분석에 기초하여 **중점기술 단위에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임무 달성을 위한 길목기술을 식별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
- 기존 부처별 전략을 국가임무 관점에서 정밀 분석하여 **국가적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정량목표**를 제시
- 임무 달성·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과 함께 인재양성·국제협력·제도개선 등 전략기술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
- 금번 로드맵은 12대 분야 중에서도 **美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를 우선 수립 대상으로 선정**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방향>

**③ 분야별 로드맵 주요 내용**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I) - 기술패권 경쟁 분야 주요 임무			
전략기술	세부 중점기술	주요 임무 (일부)	
이차전지	리튬이온전지 / 핵심소재 모듈·시스템	차세대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경쟁국 추격을 압도하는 리튬이온전지 최고성능화 (이론적 한계 수준 (350Wh/kg) 에너지밀도 구현) 초성능-리튬금속 / 초안전-반·전고체 / 광물자립-나트륨이온 상용급 기술 확보
반도체	고집적·저전력 메모리 첨단 패키징 차세대 센서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전력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 저전력·고효율 ' AI 반도체 (10TFLOPS/W 이상), 차세대 메모리 소자, 이종집적 칩렛 패키징, 극한환경용 전원자립형 센서 개발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소자·부품·장비	프리즘 디스플레이	초고성능(저전력·고해상도·고밝기) 통한 글로벌 경쟁력 1위 탈환 마이크로LED 조기상용화 를 위한 고속·고효율 생산기술 확보
첨단 모빌리티	자율주행시스템 전기·수소차	도심항공교통	'27년 Lv.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를 위한 고성능 인공지능 (현재 대비 10배 수준(1,000TOPS)) 및 보안·안전성 관련 표준·인증 선점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함

그간 역대 정부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제도 개선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됨

* 벤처투자 : ('06) 0.7조원 → ('21~'22 평균) 약 14.2조원 수준 (약 20배 증가)
신설법인 : ('06) 5만개 → ('21~'22 평균) 약 12만개 수준 (약 2.4배 수준)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시장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창업정책 체계(패러다임)를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

-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투자사(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팀스」 프로그램 신설
-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케이(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

②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

-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여 '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여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
-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하여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

③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하여 청년들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케이(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
-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
-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

④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함

- 개별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
- 대기업의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유도를 위해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 검토

-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 예정

⑤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분위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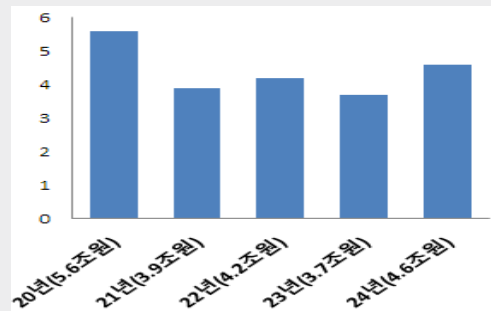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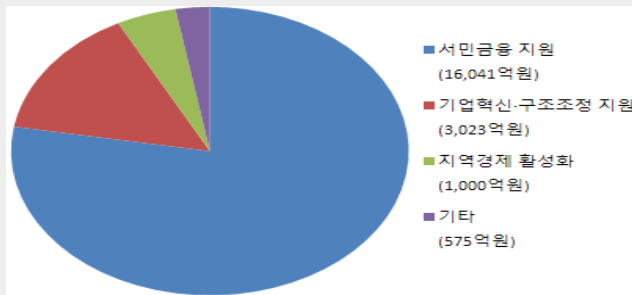
-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 확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2023-08-29

금융위원회의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5,640억원 규모로 2023년 세출예산 대비 8,003억원 (21.3%) 증액된 수준으로 '24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확보(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함



【서민금융 지원】으로는

① 햇살론15 (900억원)

-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원 편성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하여 '24년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임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7,600억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재기 지원을 목표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4년 새출발기금 예산을 7,600억원 편성함

③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60억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24년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투입하여 연간 2,8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임

④ 청년도약계좌 (5,000억원), 청년희망적금 (1,657억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4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5,000억원 편성함

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315억원)

- 정부는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및 농·수·축산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을 315억원 편성하였으며, 정부출연금 외에도 한국은행출연금 등을 통해 641억원 규모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⑥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0억원)

-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하여 예산 10억원을 편성함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으로는

① 혁신성장펀드 (2,400억원)

-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신산업·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임

② 핀테크 지원사업 (123억원)

-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③ 기업구조혁신펀드 (500억원)

-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의 구조조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추가 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 구조조정 투자 시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육성할 예정임

II. 주요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국무총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09-14 시행예정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 됨

이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정하여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정밀검사의 대상이 아닌 수입식품등 등으로 정하고, 수입식품등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인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며, 수입신고가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9조의2 신설,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호, 제49조의2 등)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8-29 시행
-------	-------------------	---------------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 신약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및 바이오시밀러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신규로 추가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별표 7 제7호가목1) 및 3) 각각 삭제, 별표 7 제7호가목8), 별표 7의2제7호 신설)

*신성장·원천기술: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40%의 세액공제 가능

**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50%의 세액공제 가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08-29 시행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

이에 따라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유전자치료제·항체치료제 제조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 제조 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별표 6 제7호가목1)·3)·6)·7) 각각 삭제, 별표 6의2제7호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8-29 시행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경쟁력이 약화된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체의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을 돕기 위하여 신산업의 범위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추가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3조의2제5호)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08-28 시행

자동차대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만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대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까지 편도로 이용하도록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제64조제3항)

국토교통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8-29 시행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기준을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인 경우 현행 660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사업시행지역별로 완화하려는 것임 (제4조의3 신설)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08.28 ~10.10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이 건축법령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사업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령 기준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안 제17조)

- 건축법령 기준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전화: 044-202-8850, 팩스: 044-202-8092)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9.01 ~10.11
-----	--------------------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1.3. 제정, 2023.7.1. 시행)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 규제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 지역을 제외하여 기존 제도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저황유의 공급·사용지역 중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을 제외 (안 별표 10의2)**
- ②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을 제외 (안 별표 11의2)**
- ③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을 제외 (안 별표 11의3)**

※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화: 044-201-6900, 팩스: 044-201-6915)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3.09.01
~10.11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1.3. 제정, 2023.7.1. 시행)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

이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현행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전 지역’에서 ‘군위군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기존 제도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대기관리권역 중 대구광역시의 지역범위를 ‘전 지역’에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변경 (안 별표1)

※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화: 044-201-6900, 팩스: 044-201-6915)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9.01
~10.11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활용실적 위탁관리,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일부 현행 규정의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물류신기술 활용 확대 및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해 물류신기술 활용실적 접수·관리업무의 위탁 (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 물류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②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여부 확인제도 도입 (안 제46조의6 신설)**
 - 우수조달물품 등록, 성능인증 등에 물류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임
- ③ **제도 명칭 명확화 (안 제46조의3 제1항)**
 -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규정하여 제도 명칭 명확화
- ④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여부 확인제도 도입 (안 시행규칙 제14조의5)**
 - 우수조달물품 등록, 성능인증 등에 물류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도입

⑤ 물류신기술 신청 수수료 삭제 (안 시행규칙 [별표3])

- 신청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 수수료(1만원) 삭제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전화:044-201-4006, 팩스 : 044-201-5601\)](tel:044-201-4006)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9.01
~10.11

지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의 경우 주로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등 우선 적용 및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등 (안 제39조제2항)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만 인정함
- ②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입법제안 방법 : [불편법령 신고](#) / [어려운 법령용어 신고](#)

의견제출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044-201-4105, 팩스 : 044-201-5650\)](tel:044-201-4105)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0인)

2023-08-29 발의

현행법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파산 및 회생 절차에 있는 채무자들이 회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파산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파산절차에도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파산 및 회생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용어를 순화함
- ②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그 절차의 신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개시의 결정기한 1개월로 명시해 두고 있음에 반하여 파산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형평에 어긋나는 점을 바로잡고 파산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이 파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함 (안 제310조)
- ③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도입하고,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는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23조의2, 제323조의3 및 제349조제1항 단서 각 신설)
- ④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하여 현행보다 주거용 면제재산의 범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83조 제2항제1호)
- ⑤ 파산절차에서 면책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정 사유를 근거로 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 (안 제562조 및 제564조)
- ⑥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개시결정 신청 당시에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이고, 현행법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11조)
- ⑦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 (안 제624조제1항)

최근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과 가치 실현을 위해 기업의 사회 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하여 기업 성과를 측정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가 확산되고 있음. 이는 세계적 추세이며, 기업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이에 정부는 관련 정책을 세워 기업이 중장기적 전략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예를 들어 EU는 탄소국경제도과 기업 공급망실사법 등을 마련, 구체적 교역과정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요구하는 등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ESG적 요소는 교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이에 세계 최초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촉진법을 제정,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규제가 아닌 기업의 순조로운 ESG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우고, 금융기관 등의 업무를 정하는 등 실효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③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함 (안 제4조)
- ④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6조)
- ⑤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안 제7조)
- ⑥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된 금융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독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안 제9조)
- ⑦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적인 기업에 우선투자를 할 수 있음 (안 제13조)
- ⑧ 일정 매출액 이상인 기업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안 제14조)
- ⑨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안 제16조)
- ⑩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를 검증하려는 검증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안 제19조)
- ⑪ 평가기관은 공시기업이 수행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를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음 (안 제28조)

- ⑫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발적 공시선언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31조)
- ⑬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필요한 기술·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촉진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안 제36조)
- ⑭ 정부는 자발적 공시선언을 통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38조)
- ⑮ 정부는 공급망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음 (안 제40조)
- ⑯ 정부는 기업경영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소비문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안 제42조)
- ⑰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인력, 확산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안 제47조)
- ⑱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안 제48조)
- ⑲ 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검증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안 제49조)
- ⑳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위장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안 제50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23-08-29 발의

현행법은 납세의무자의 주택 및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면서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액이 아니라 해당 재산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해당 산식은 국회가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여 공제대상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규정한 것이고, 법원도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

이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6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2023-08-30 발의

현행법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계산 시 차감항목에서 배당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배당의 경우 고소득자와 해외투자자들에게 상당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소득증진과 우리 경제로의 환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당시 제기된 비판에 따른 것임

그러나 최근 들어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일컫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풍에 힘입어 가계 금융 자산 가운데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과거와 달리 배당을 통하여 기업 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되는 높은 효과가 기대됨

한편, 우리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우리 증시에 대한 주요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래서 금융당국과 정부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배당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이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산정 시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액 중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게 지급되는 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을 통한 소득 배분과 자본시장에서의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고, 기업의 유보소득을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3-09-01 발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안 제13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 제25조의6제1항, 안 제25조의7 신설)

- ②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안 제29조의8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3 제1항 및 제3항)
-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③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 (안 제30조의6제1항 및 제4항)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30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④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안 제91조의20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 (안 제91조의24 신설)
- ⑤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96조의3제1항)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바, 그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⑥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안 제100조의7제2항)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안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
- ⑦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안 제104조의15)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안 제104조의24)
 -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안 제104조의33 신설)
- ⑧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안 제105조의3 신설, 안 제106조제1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도록 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⑨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안 제126조의2제2항)
 -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안 제136조제6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3-09-01 발의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가 친인척 등을 통해 면허를 재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 이내에는 특수관계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상향하며,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주류의 소분 판매 등 주류를 단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 제한기준 합리화 (안 제7조제1호의2 신설)

-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가 그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 취득을 제한함

②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 상향 (안 제13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

-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탁주는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탁주·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는 '2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이상'으로, 주정 및 증류주류는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맥주는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함

③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마련 (안 제14조의2제1항제8호 신설)

- 식품접객업 영업장소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함

기획재정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3-09-01 발의

주류 종류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 주류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및 88만5700원으로 정하되,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류업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일원화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지금까지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목적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익자가 납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익자가 다수인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개별 수익자들이 각각 납세하기보다는 수탁자 1인이 납세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앞으로는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함

②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범위 축소 (안 제18조제8호)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이를 자본준비금의 일종으로 보아 그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③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등 요건 완화 (안 제18조의4제1항 및 제57조제5항)

- 내국법인이 그가 출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부분은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그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에서 ‘100분의 2 이상 출자’로 완화함

④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배분 근거 마련 (안 제76조의19제5항 신설)

-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정산할 수 있도록 함

* 연결집단: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집단을 말함

⑤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 (안 제98조의8 신설)

-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 외국인 통합계좌: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 · 결제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함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3-09-01 발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안 제12조제3호마목 · 머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②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 (안 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한 대가로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말함

③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④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안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제6항)**

-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 간주임대료 과세: 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전세금 등의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⑤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시적 상향 (안 제34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59조의4제8항)**

- 특례기부금의 범위에 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그 밖의 자원봉사용역의 가액과 학교·병원 등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을 추가함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 (안 제156조의9 신설)**

-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 외국인 통합계좌: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2023-08-29 발의

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등의 보호의무자가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최근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환자의 실종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호의무자가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치매환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하려는 것임 (안 제26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등 10인)

2023-08-31 발의

인터넷의 발달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핀테크, IT 서비스 등이 국민들의 일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인증 서비스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제도가 사라지고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활발히 경쟁하는 체계를 구축한 현재, 이 법에 따른 본인확인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일반적인 본인확인과의 의미 혼란, 연계정보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인증 서비스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아울러, 국내의 본인확인기관은 주로 통신사와 은행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본인확인기관은 주로 정부 산하 기관 또는 연방의 각 행정기관이 IT 기술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주요 선진국과 같이 IT업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 기술보유업체에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이에 연계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본인확인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하여금 연계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조,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5까지 및 제76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3-08-30 발의

경쟁국들이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놓고 국가의 운명을 건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을 보유하여 산업기술 유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산업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데 많은 한계가 노출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갈수록 노골적이고 지능화되는 기술유출 범죄를 사전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및 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 신고 단계에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행정적 절차와 관련 기관과의 공조 강화, 담당 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제고하여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발전시키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게 함 (안 제15조제3항 신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에 따른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안 제15조제4항 신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침해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함 (안 제17조제3항 신설)
- ④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함 (안 제34조제6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2023-08-31 발의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을 둘러싼 경쟁국들 간 패권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며 전략 자산인 산업기술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매국적 중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담은 현행법은 사실상 기술의 유출을 방치하고 있어 국가 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대책으로도 대단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게다가 경쟁국들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간첩죄까지 적용하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산업기술을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산업기술 유출의 방지를 위한 관련법으로 처벌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 보니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신고된 기술유출 사건 5건당 1건은 무죄 판결이고 징역형은 평균 선고형량이 징역 1년이라 하며, 2018년부터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 93건에 기업의 피해액만 25조원에 이른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마저 나오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반국가적 범죄를 차단하는 데 드러난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단호하고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에 주요 경쟁국의 수준에 맞게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따른 간첩죄 수준으로 상향하고, 손해배상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 국익 창출, 국가·경제 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2제2항)

- ②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7년 이상으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며,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 (안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6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023-08-31 발의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육성하려는 것임 (안 제5조 제2항제7호의2 및 제12조제4항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32인)

2023-08-28 발의

일본 정부는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였음. 현재까지 생성된 후쿠시마 오염수는 130만 톤에 달하며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임. 그러나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가 해양생물 등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나 그로 인해 국민 건강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그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현재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 과정에서 사실상 동의 입장을 보인 것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리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WTO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 유출로 일본의 바다 환경이 위험해졌으며 수입국은 잠재적 위험성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임. 하지만 정부는 후쿠시마 바다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결론 내린 IAEA 보고서에 대해 존중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수입 금지 조치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1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식의원 등 10인)

2023-08-28 발의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처분업자와 매립처분업자는 엄격한 업역 분리 원칙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반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들어오더라도 재위탁하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각처분업자와 매립처분업자의 영업대상 폐기물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폐기물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34조의11)

환경노동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2023-08-30 발의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임

그런데 경유자동차 사용이 금지되는 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사업자로 높은 자동차 구매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에 반해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는 부족하여, 전기차 등 친환경 상용차의 공급과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유예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2023-08-31 발의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최대 근로시간 허용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함.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지나친 과로가 이어지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해·재난, 인명·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자 함. 또한,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안 제53조)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2인)

2023-08-28 발의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고의·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23.8.)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LH 부실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하여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5억원에서 10억으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0인)

2023-08-31 발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정부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분 이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음에도 관련 규정을 악용·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 하역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113조의3)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9/5(화) 14:00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9/6(수) 14:00	대정부질문 (외교 · 통일 · 안보분야)
		9/7(목) 14:00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9/8(금) 14:00	대정부질문 (교육 · 사회 · 문화분야)
운영위	전체회의	9/4(월) 10:00	-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정무위	전체회의	9/4(월) 14:00	-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예결소위	9/5(화) 10:00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전체회의	9/6(수) 10:00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교육위	법안소위	9/7(목) 09:00	- 법안 심사
국방위	전체회의	9/7(목) 10:00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9/7(목) 10:0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방문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자료제출 요구의 건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채택시)
연금특위	전체회의	9/4(월) 14:00	- 간사 선임의 건 - 민간자문위원회 중간 보고의 건
국토위	전체회의	9/7(목) 10:00	- 법률안 상정
정보위	전체회의	9/4(월) 15:00	- 2022회계연도 결산 상정
	예결소위	9/6(수) 10:00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전체회의	9/7(목) 13:30	-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예결위	전체회의	9/4(월) 10:00	- 2022회계연도 결산
	소위	9/6(수) 10:00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소위	9/7(목) 10:00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소위	9/8(금) 10:00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참고] 제410회국회(정기회) 전체 의사일정

일시	부의안건	비고
9/1(금) 14:00	개 회 식	
개회식 직후	1. 제410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4. 안건심의	◦ 9/1~12/9(100일간)
9/2(토)~9/4(월)		◦ 위원회 활동(법률안 등 안건심사)
9/5(화) 14:00	1. 정치에 관한 질문	
9/6(수) 14:00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9/7(목) 14:00	1. 경제에 관한 질문	
9/8(금) 14:00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9/9(토)~9/17(일)		◦ 위원회 활동(법률안 등 안건심사)
9/18(월) 10:00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더불어민주당
9/19(화)		◦ 위원회 활동(법률안 등 안건심사)
9/20(수) 10:00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국민의힘
9/21(목) 14:00	1. 안건심의	
9/22(금)~10/30(월)		◦ 위원회 활동 - 국정감사: 10/1~10/27 (18일간) - 법률안등 안건심사 ※ 개천절:10/3 ※ 한글날:10/9
10/31(화) 10:00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1/1(수)~11/8(수)		◦ 위원회 활동 - 예산안 및 법률안 등 안건심사
11/9(목) 14:00	1. 안건심의	
11/10(금)~11/22(수)		◦ 위원회 활동 - 예산안 및 법률안 등 안건심사
11/23(목) 14:00	1. 안건심의	
11/24(금)~11/29(수)		◦ 위원회 활동 - 예산안 및 법률안 등 안건심사
11/30(목) 14:00	1. 안건심의	
12/1(금) 14:00	1. 안건심의	
12/2(토)~12/7(목)		◦ 위원회 활동(법률안 등 안건심사)
12/8(금) 14:00	1. 안건심의	
12/9(토)		◦ 위원회 활동(법률안 등 안건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발간 등)

구분	일자	제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4(월) 10:00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 파행적 지방 사립의대 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고영인·도종환·서동용 ·이상헌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4(월) 10:00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	박범계·박병석·박영순 ·이상민 의원실 등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
	9/4(월) 10:00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산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토론회	양이원영·이수진(비) 의원실, 기후변화센터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9/4(월) 10:00	국회 1.5°C포럼 연속 토론회 -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금융의 역할	국회 1.5°C포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의원회관 7간담회실
	9/5(화) 09:00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 안 토론회	정우택·이만희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5(화) 10:00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4 -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강화 민주당의원모임	국회 본관 3식당 별실
	9/5(화) 10:00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방안을 위한 연속토론회 1 -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구자근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9/5(화) 14:00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은?	김형동·노웅래·박정· 우원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실
	9/5(화) 14:00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일종·주철현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5(화) 15:00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신원식·김병주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3세미나실
	9/6(수) 09: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정춘숙·최연숙·강은미 ·이수진(비)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9/6(수) 10:00	K-브랜드 위조상품 전시회·세미나	김한정 의원실, 특허청	의원회관 3세미나실
	9/6(수) 10:00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9/6(수) 10:00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II)	김희곤 의원실, ICT법경제연구소	의원회관 2소회의실

구분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6(수) 14:00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위기 극복 전략	송언석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6(수) 14:00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위한 보안 신기술 적용 가능성 : 해킹 위험에서 자유로운 아파트 조성 방안 모색	조승래·한준호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9/7(목) 08:00	제10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 중국 경제의 흐름과 한국의 미래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의원회관 2소회의실
	9/7(목) 14:00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장제원·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9/4(월)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수도권)	국회사무처	
	9/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0호 발간 -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독일 입법례	국회도서관	
	9/6(수)	금주의 서평 제644호 발간 - 도서명 : 과학의 반쪽사 - 저자:제임스 포스켓	국회도서관	
	9/7(목) 10:00	제7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 국가전략과 종합국력	국회도서관 박수영 의원(국)	국가전략 정보센터
	9/7(목) 10:00	예산정책처 정책현안 연속 토론회(제1회) 개최	예산정책처	의원회관 1소회의실
	9/5(화) 15:00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세미나 개최 -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예산정책처	의원회관 3세미나실
	9/5(화) 14:00	국제세미나 개최 - 녹색전환을 이끄는 의회의 역할: 한-EU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미래연구원	국가전략 정보센터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호 뉴스레터(제19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자	제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8/28(월) 10:00	노인요양시설 입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김원이·남인순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원회관 3세미나실
	8/28(월) 13:00	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	의원회관 6간담회실
	8/28(월) 14:00	기간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갱신기대권' 법제화 방향에 대한 토론회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8/28(월) 14:00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노용호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29(화) 14:00	초기 알츠하이머병 조기발견과 의료적 치료접근성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실
	8/29(화) 14:00	한전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류호정 의원실, 공공운수노조 등	의원회관 2간담회실
	8/30(수) 13:30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기업에게 듣는다	이원욱·홍정민 의원실, 기업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의원회관 7간담회실
	8/31(목) 14:00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김성환·김정호 의원실,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9/1(금) 09:3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	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8/29(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9호 발간 - 유럽연합(EU)의 방위산업강화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8/30(수)	금주의 서평 제643호 발간 - 도서명: 그 많은 개념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 저자: 야마모토 다카미쓰	국회도서관	
	8/30(수)	「World&Law」 제2023-17호 발간 - 미래를 위한 공급망 실사, 지금 세계는?	국회도서관	
	8/31(목)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4호 발간 (2023년 제3호)	예산정책처	
	8/28(월)	「이슈와논점」 제2133호 발간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해외사례와 시사점	입법조사처	

구분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30(수)	「이슈와논점」 제2134호 발간 - 수학적 모델·AI 기반 코로나19 대응의 성과와 과제	입법조사처	
	8/31(목)	「이슈와논점」 제2135호 발간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국내·외 비교와 쟁점	입법조사처	
	9/1(금)	「NARS 브리프」 제18호 발간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	입법조사처	
	9/1(금)	「NARS 현장실태조사」 제2호 발간 - 지속가능한 자립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입법조사처	
	8/28(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6호 -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8.28~9.3)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8/28(월)	기업인수/합병	신주인수계약상 신주인수대금 반환 약정 및 그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약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8/29(화)	에너지 · 자원	제3자 PPA 고시 개정
8/29(화)	조세	의료법인의 취득세 추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추정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8/30(수)	노동	사업장 내 CCTV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판결의 동향
8/31(목)	조세	월간 노동 뉴스레터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